

2017년 상반기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 1차. 2017. 4. 13(목) 13:00~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 10층)
- 2차. 2017. 4. 20(목) 14:00~
대전(철도공사 대강당)
- 3차. 2017. 4. 25(화) 14:00~
대전(철도공사 대강당)



국민권익위원회

워크숍 진행순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00~13:30 30'	워크숍 준비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4:00~15:00 60'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청탁금지제도과
15:00~15:30 30'	휴식 및 설문지 작성	
15:30~16:10 40'	빈발질의·오해사례 해설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해석과)
16:10~17:00 50'	질의응답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해석과)
17:00~17:30 30'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보호보상과
17:30~17:35 5'	폐회 및 설문지 제출	

CONTENTS

- 1차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1
- 2차시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 및 사례해설 ... 23
- 3차시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63

1차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표순서



1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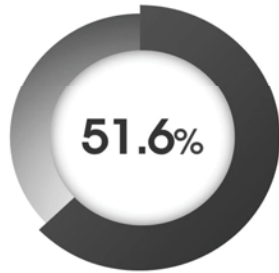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부정청탁의 금지
- ◆ 금품등 수수 금지
- ◆ 위반행위 신고·처리
- ◆ 신고자 보호·보상

3 운영현황 및 협조요청사항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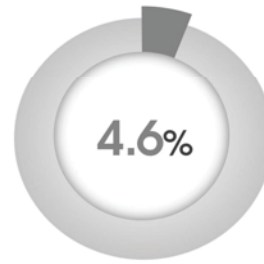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2016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2016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인식의 차이’
47%p

-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뇌물·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

미국, 1962

부패단속법

독일, 1997

이해충돌방지법

캐나다, 2006

뇌물방지법

영국, 2010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래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 선의의 공직자등의 보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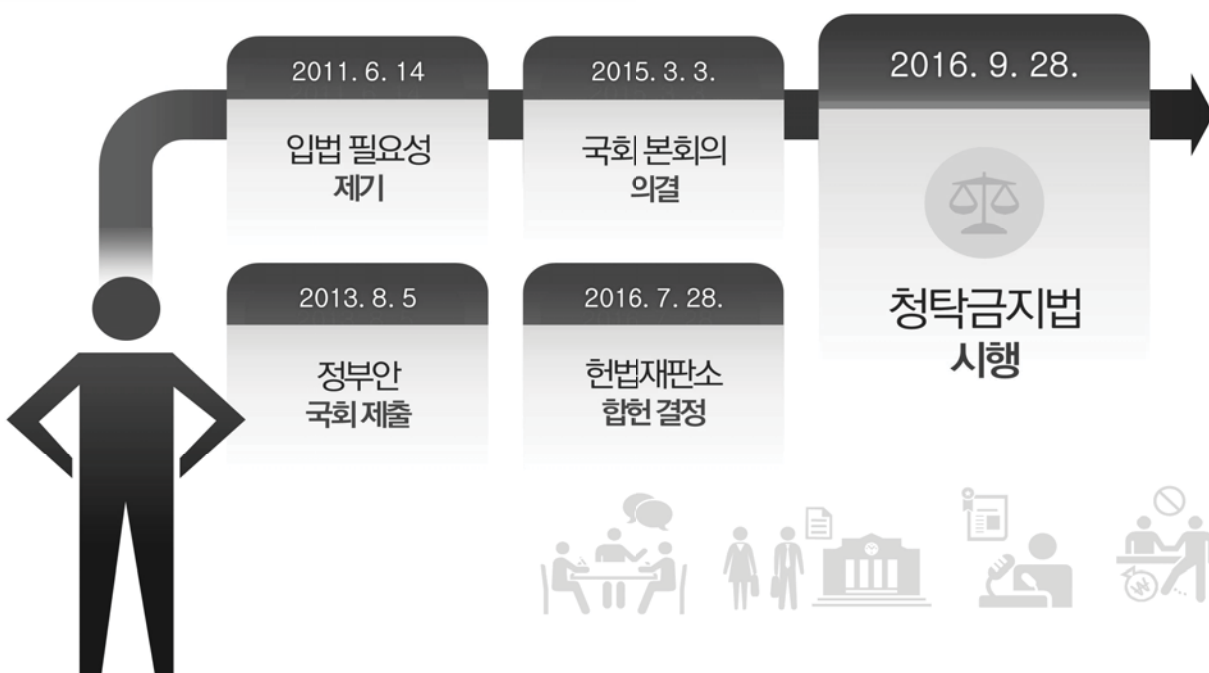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등 피해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사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려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내수 위축 우려

관가 “안 만나면 그만”
청탁금지법 핑계 ‘불통’ 어쩌나

청탁금지법 앞두고
농축산물업계 타격 우려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교육계
비리근절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정도 경영’ 강화

청탁금지법 조속한 제정
국가시스템 효율화에 기여



법률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등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원 상·하의·평가 등을 하는 자
-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지위·권한 남용

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들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 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 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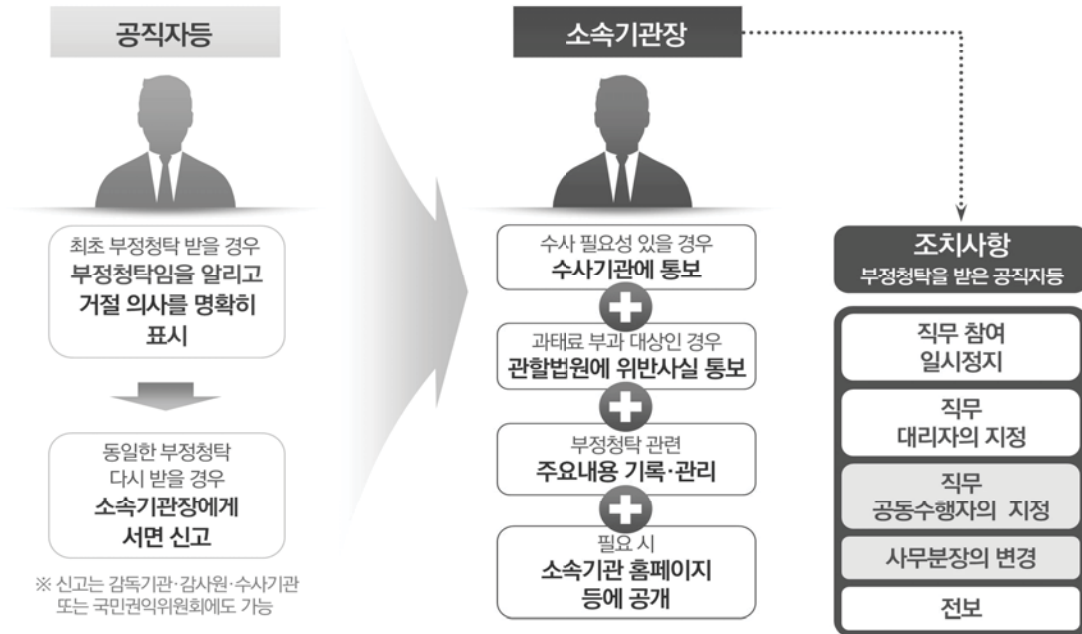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예외사유 자세히 보기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 관련 FAQ

Q 1.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Q 2.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사유로 하고 있는데, 보좌관의 전달행위도 포함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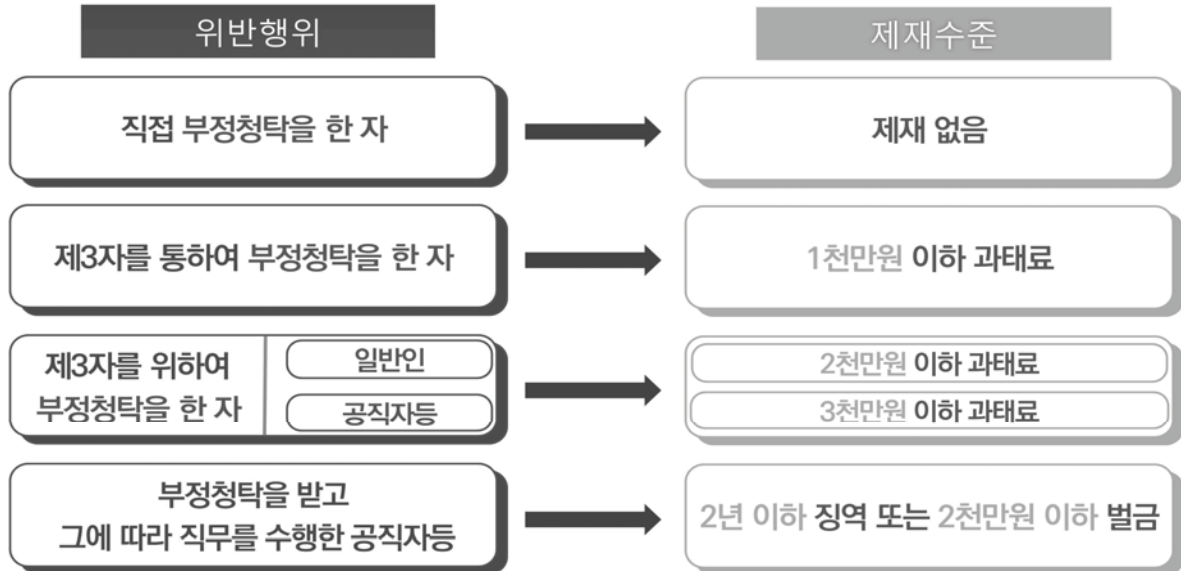
Q 3. 부정청탁을 받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Q 4. 정상적으로 업무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제재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 위반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여 발착과 징계 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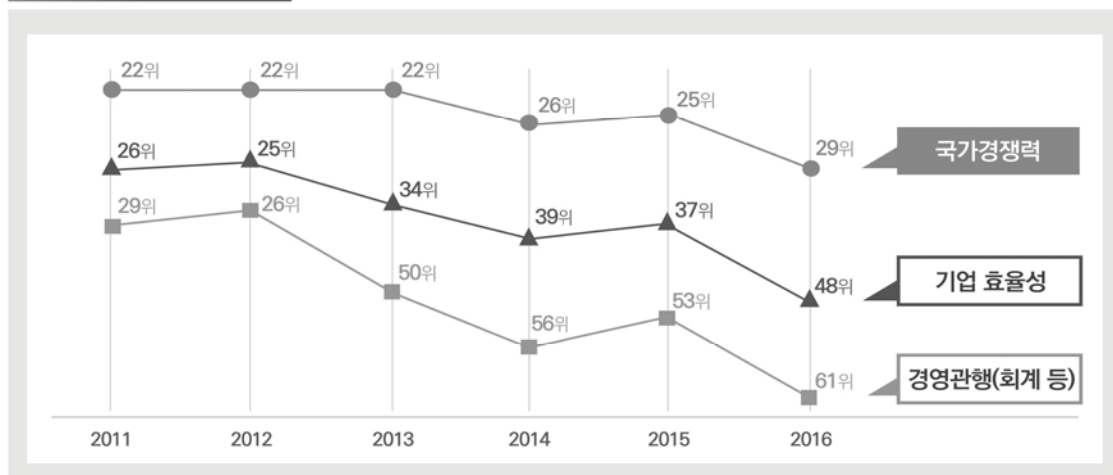


양벌규정

도입배경

●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

2016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 출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16.5월)



양벌규정 내용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 '금품등'의 정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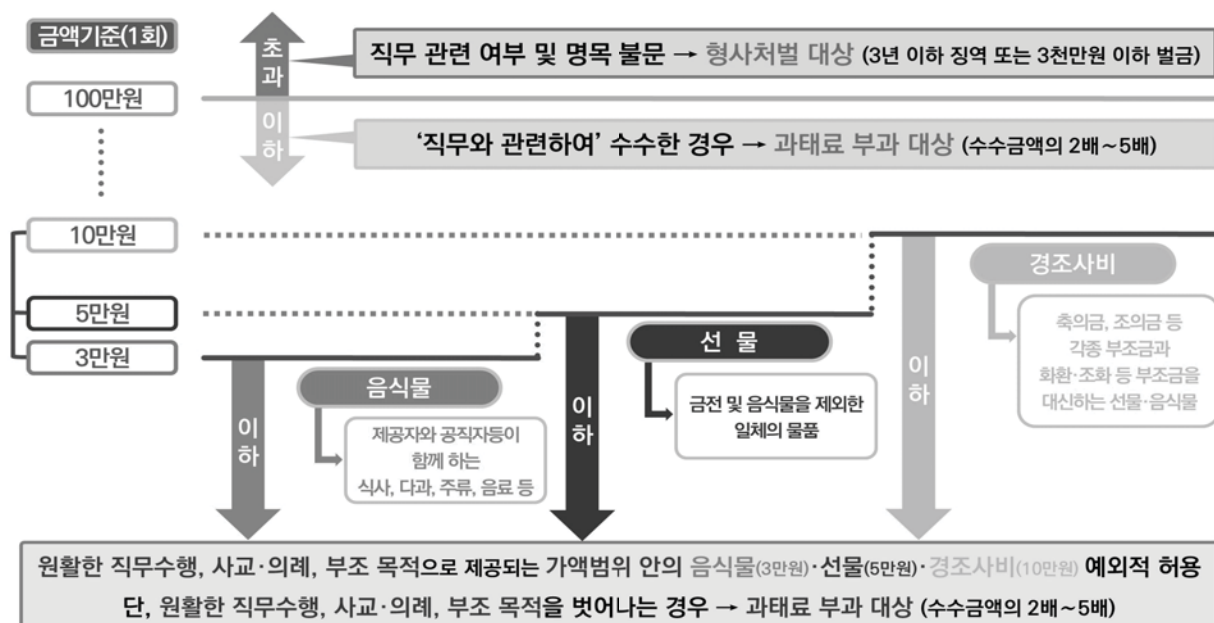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제2호 관련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 전달



떡값
45,000원

과태료
90,000원

조사받기 하루 전에 떡을 전달하는 등
제공 시점과 경위를 고려하면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저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제3호 관련

● 협찬 등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 판단 기준

협찬시 정당한 권원의 요건 :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 충족 필요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사 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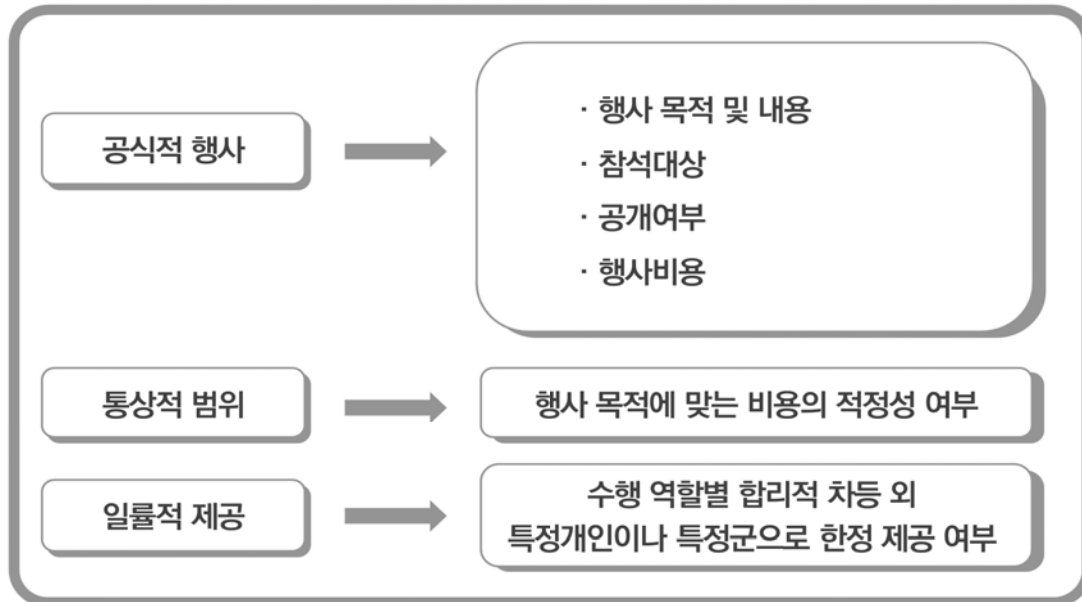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
(반대급부)의 존재

금품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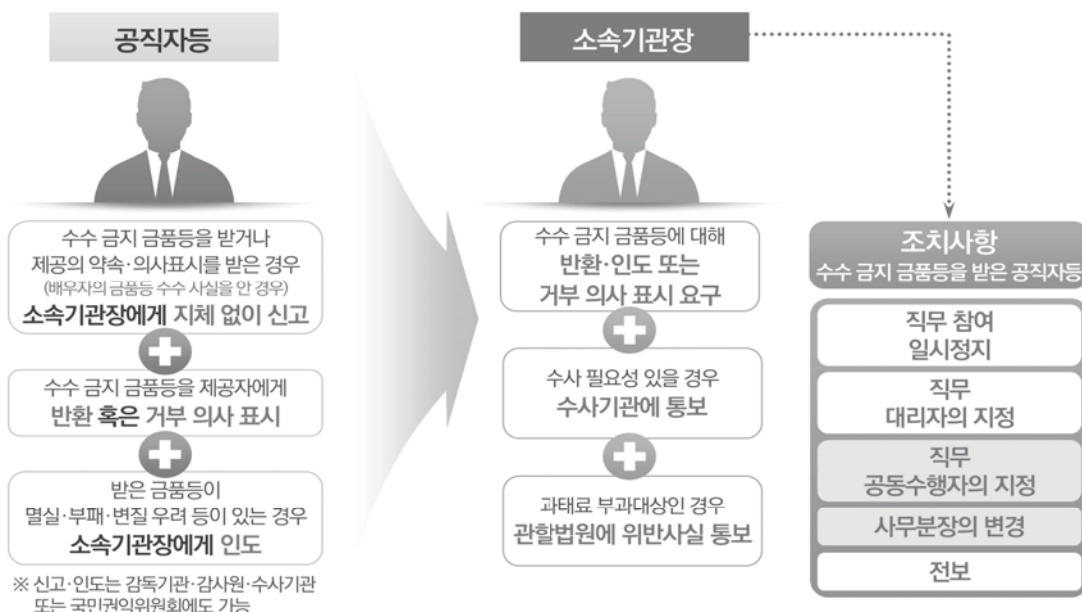
예외사유 제6호 관련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금품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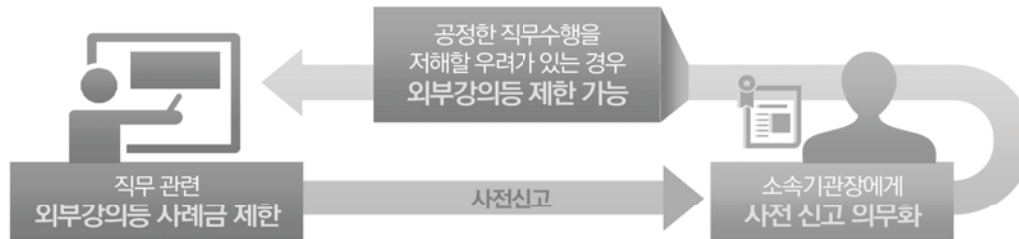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품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 1회의 의미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을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금품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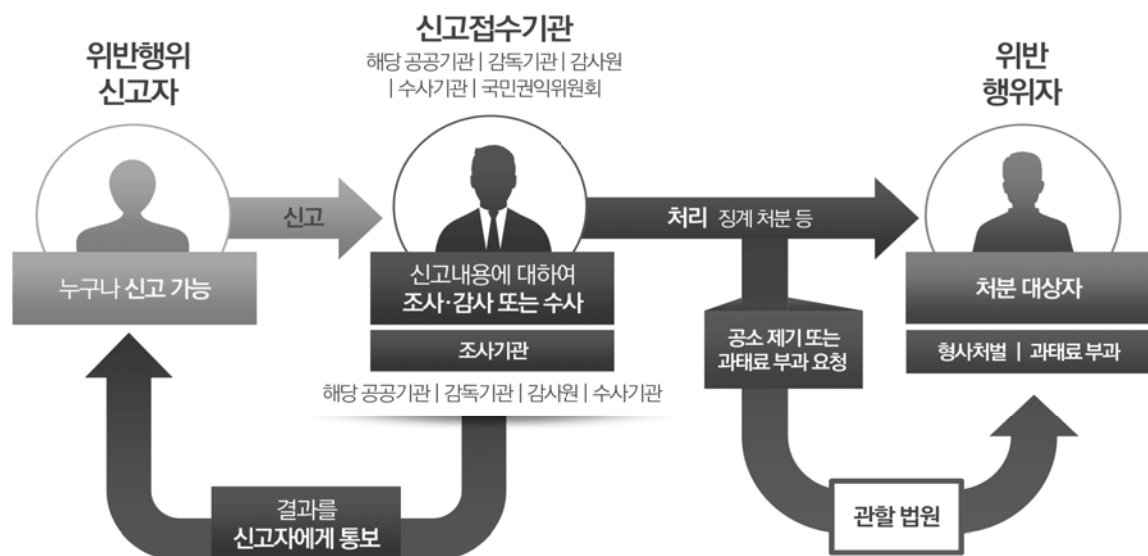
Q 1. 외부강의료도 연간 300만원 초과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Q 2. 이미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각종 자문,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을 적용받는지?

Q 3. 외부강의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구체적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시행 6개월 신고 접수·처리 현황(16.9.28~17.3.10)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현황

건수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총 2,311건	135건	412건	1,764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현황

구 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계
수사의뢰	3건	16건	19건
과태료 부과 요청	2건	36건	38건
계	5건	52건	총 57건

■ 시행 6개월 신고 접수 · 처리 현황(16.9.28~17.3.10)

주요 수사 의뢰 사례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진료순서 대기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수행
- ▶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및 수수

- ▶ 피의자 가족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천만원을 제공
- ▶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원의 금품 요구
- ▶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교수들이 각축하여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 수수
- ▶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과 면담 중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 ▶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

■ 시행 6개월 신고 접수 · 처리 현황(16.9.28~17.3.10)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 ▶ 소방서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소방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 ▶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청탁

●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 및 수수

- ▶ 공사 감독업무 수행 공직자가 하도급 공사업체 이사로부터 100만원 수수
- ▶ 부서장이 부서원의 각축로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원 상당의 퇴직선물 수수
- ▶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 수수
- ▶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 · 주점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 ▶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 ▶ 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같은 날 세 곳의 장소에서 28만원 상당의 식사 · 음주 접대 수수
-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박스 제공

■ 협조 요청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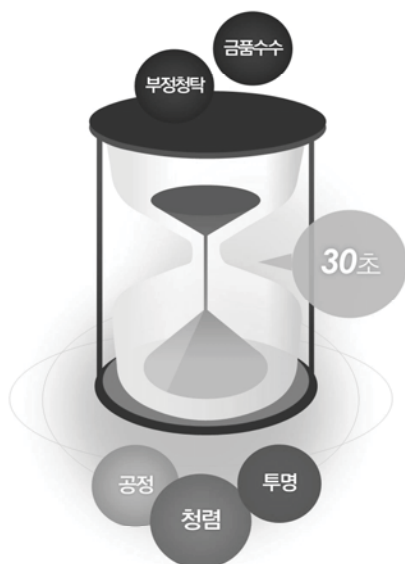
● 유권해석 요청 및 상담 창구 이용 협조 (청탁금지해석과, 전담 헬프데스크)

● 소속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

- 신고 접수 · 처리, 교육, 소관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및 안내 등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및 체감변화 우수사례 제출 등

※ 청탁금지법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누구도
부정청탁·금품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기전 **30초**,
받기전 **3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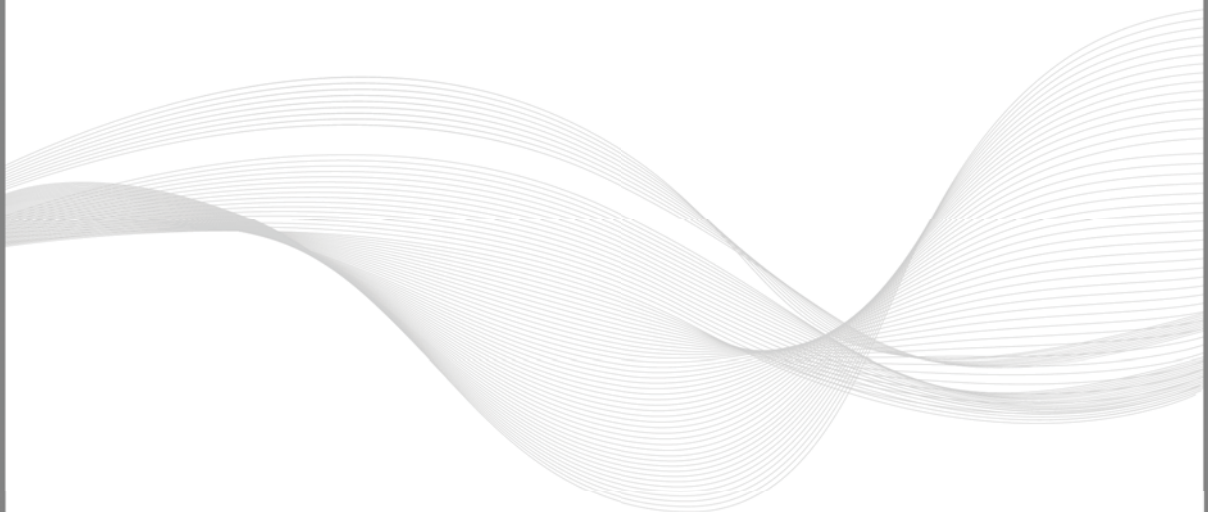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차시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 및 사례해설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교육자료(4.13.)

1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

Q. 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위반자가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건

☞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

☞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필요함

-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제8호 :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 특히 고소사건의 수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큼
- 그런데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
-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가액도 45,000원 상당인바, 이와 같은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과태료 금액의 결정 :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이 사건의 경우 2배의 과태료 부과)

Q. 위반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일행이 고성과 난동을 부리는데도 경찰관이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1만 원권 1장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음. 그런데 위반자는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1만 원권 1장을 몰래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

☞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자로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 예외사유(제8호) 해당 여부

- ◆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그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 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위와 같이 금품등의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수사기관에 그 직무관련자는 그 의도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소액의 금품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이 같은 행위는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처벌 필요성이 없는 극히 경미한 위반행위 해당 여부

- ◆ 위반자는 경찰관이 명백히 거부 의사 표시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고, 경찰관은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로 인하여 자진신고 후 그 경위에 대하여 감찰관에게 진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금품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음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Q.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위반자가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한 사건

☞ 민간인인 위반자 본인과 군부대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 중사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위 중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2배인 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Q. 위반자는 2016. 00. 00. 16:10경 A노래방에서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음주를 하고, 이어 17:30경부터 18:45경까지 B노래방에서 위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음주를 한 후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 비용 479,164원을 부담함으로써 금품 등을 제공한 사건

☞ ① 위반자는 공직유관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의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점, ② 수수된 금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시간적으로 근접하기는 하나 3회에 걸쳐 금품 등이 제공된 점, ③ 금품 등이 수수된 동기 및 그 경위, ④ 수수된 금품 등이 이후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Q. 위반자들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로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를 제공한 사한 사건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들이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Q.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OO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 드라마 공연제작사의 대표이사와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식사를 하고 위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계산함으로써 금품 등을 제공한 사건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

이 사건에서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OO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 대표이사는 이를 제공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함

☞ 담당 공무원, 대표이사 및 법인에게 각각 수수 및 제공 금액 2배의 과태료를 부과

Q. 위반자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자신의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를 수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명함과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건

☞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나,

한편 금품수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2 법 적용대상 관련

<언론사>

Q.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지?

-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자임

Q. PD, 방송작가, 스텝, 기상캐스터, 앵커 등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 ☞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언론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직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직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Q.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 ☞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Q.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IPTV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Q.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웹진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Q.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함

Q.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에 해당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되는 것은 아님

< 공무수행사인 >

Q.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 해석상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3 부정청탁 금지 관련

<부정청탁 성립 요건 관련>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자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자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와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는 대표이사 등의 상급자를 포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자는 처벌받나요?

☞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4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

Q. 언론사 임직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언론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Q. 민간기업에 출입하는 기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민간기업의 임직원에게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님

Q. 정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선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함(다만, 구매자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선물의 가액산정 시 선물 포장비 및 택배비가 포함되는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산정 시 포장비는 포함되지만, 택배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산정 시 제외됨

Q.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언론사 임직원은 정당한 권원 없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됨

※ 정당한 권원의 요건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존재**(광고성 기사의 경우 기사와 광고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받은 사실의 명시)

※ 신문법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Q.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승진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 가능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 가능)

Q.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이라면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나 수수해도 되는지?

☞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하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Q.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언론사 임직원에게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Q. 직무관련자가 언론사 임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언론사 임직원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언론사 임직원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제공 의사표시를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Q.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이 언론사 임직원 1명과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언론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액인 10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언론사 임직원도 동일하게 제재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Q.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음식물 가액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음식물 상품권을 제공한다면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기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은 경우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할인 금액 상당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음. 다만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는 허용됨

Q.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나요?

☞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임.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법 제8조 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Q. 언론사 임직원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초과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Q. 언론사 보도국장 甲의 대학생 딸 乙이 아버지의 직속 부하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보도국장 甲의 대학생 딸 乙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경우 등 보도국장 甲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Q. 언론사 임직원이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함. 따라서 언론사 임직원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Q.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사이에서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함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자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됨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됨

Q.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됨

<금품등 신고 처리 관련>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제공 의사표시를 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언론사 임직원이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 언론사 임직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Q. 언론사 임직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누구든지 언론사 임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언론사 임직원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Q. 언론사 임직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언론사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요?

☞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언론사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함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5 외부강의등의 관련

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공직자등의 신분인 이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음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Q.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

Q.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을 수수할 수 있음

< 참고 :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정리 >

구분	사례	해당 여부
강의 강연 회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강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	○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 진행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법령(조례·규칙 포함) 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	×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
기고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
	잡지·저널 등 논문 게재 요청에 따른 논문 기고	○
	잡지·저널 등 요청 없이 공모·심사에 의해 실시하는 논문 게재	×
기타	언론 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등 출연	×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 또는 전시	×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자문	×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교육자료(4.20, 4.25.)

1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

Q. 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위반자가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건

☞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

☞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필요함

-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제8호 :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 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 특히 고소사건의 수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큼

- 그런데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

-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가액도 45,000원 상당인바, 이와 같은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과태료 금액의 결정 :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이 사건의 경우 2배의 과태료 부과)

Q. 위반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OO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일행이 고성과 난동을 부리는데도 경찰관이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1만 원권 1장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음. 그런데 위반자는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1만 원권 1장을 몰래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

☞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자로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 예외사유(제8호) 해당 여부

- ◆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그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 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위와 같이 금품등의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수사기관에 그 직무관련자는 그 의도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소액의 금품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써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이 같은 행위는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처벌 필요성이 없는 극히 경미한 위반행위 해당 여부

- ◆ 위반자는 경찰관이 명백히 거부 의사 표시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고, 경찰관은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로 인하여 자진신고 후 그 경위에 대하여 감찰관에게 진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금품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음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Q.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위반자가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한 사건

☞ 민간인인 위반자 본인과 군부대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 중사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위 중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2배인 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Q. 위반자는 2016. 00. 00. 16:10경 A노래방에서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음주를 하고, 이어 17:30경부터 18:45경까지 B노래방에서 위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음주를 한 후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 비용 479,164원을 부담함으로써 금품 등을 제공한 사건

☞ ① 위반자는 공직유관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의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점**, ② 수수된 금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시간적으로 근접하기는 하나 3회에 걸쳐 금품 등이 제공된 점, ③ 금품 등이 수수된 동기 및 그 경위, ④ 수수된 금품 등이 이후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Q. 위반자들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로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를 제공한 사한 사건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들이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Q.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OO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 드라마 공연제작사의 대표이사과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식사를 하고 위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계산함으로써 금품 등을 제공한 사건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

이 사건에서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OO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 대표이사는 이를 제공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함

☞ 담당 공무원, 대표이사 및 법인에게 각각 수수 및 제공 금액 2배의 과태료를 부과

Q. 위반자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자신의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를 수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명함과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건

☞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나,

한편 금품수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2 법 적용대상 관련

<국가기관>

Q.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함

<공직유관단체>

Q.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 인지?

- ☞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

Q. 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로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Q.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Q.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Q.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준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Q. 「△△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위임이나 자문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Q.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여기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 해석상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3 부정청탁 금지 관련

<부정청탁 성립 요건 관련>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 ☞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 ☞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에 따라 규율됨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 상급 공직자등은 하급 공직자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임

<부정청탁 신고 처리 관련>

Q.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Q.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 과태료 부과 여부, 기소유예 또는 유죄판결 유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Q.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은?

☞ 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사항에 인적사항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정청탁의 공개는 부정청탁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음

4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

Q.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Q. 정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함(다만, 구매자가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려면 수수가 가능한지?

-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음.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는 허용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 승진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 가능)

Q.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이라면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나 수수해도 되는지?

- ☞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되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음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Q.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 ☞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음식물 가액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음식물 상품권을 제공한다면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할인 금액 상당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

Q.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청탁 금지법상의 경조사비 가액한도(10만원)의 적용을 받나요?

☞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가액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초과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 관련이 있는 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됨

Q.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함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됨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됨

Q. 공직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함. 따라서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금품등 신고 처리 관련>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제공 의사표시를 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Q.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Q.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5 외부강의등의 관련

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공직자등의 신분인 이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음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Q.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

Q.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을 수수할 수 있음

< 참고 :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정리 >

구분	사례	해당 여부
강의 강연 회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강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	○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 진행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법령(조례·규칙 포함) 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	×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
기고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
	잡지·저널 등 논문 게재 요청에 따른 논문 기고	○
	잡지·저널 등 요청 없이 공모·심사에 의해 실시하는 논문 게재	×
기타	언론 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등 출연	×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 또는 전시	×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자문	×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	×

3차시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목차



I. 신고자 보호제도

II. 신고자 보상제도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I.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비밀보장 제도

신분노출 금지

- 인적사항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권익위, 징계권자에게 위반자 징계요구 (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4항)

비밀누설 금지

- 공직자 (신고, 처리업무수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조사·형사절차 비밀보장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비밀보장 절차



-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 접수



- 사실확인 및 조사



- 권익위 결정



- 고발조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2. 신고자·협조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신변보호 제도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방지 요구

-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



신변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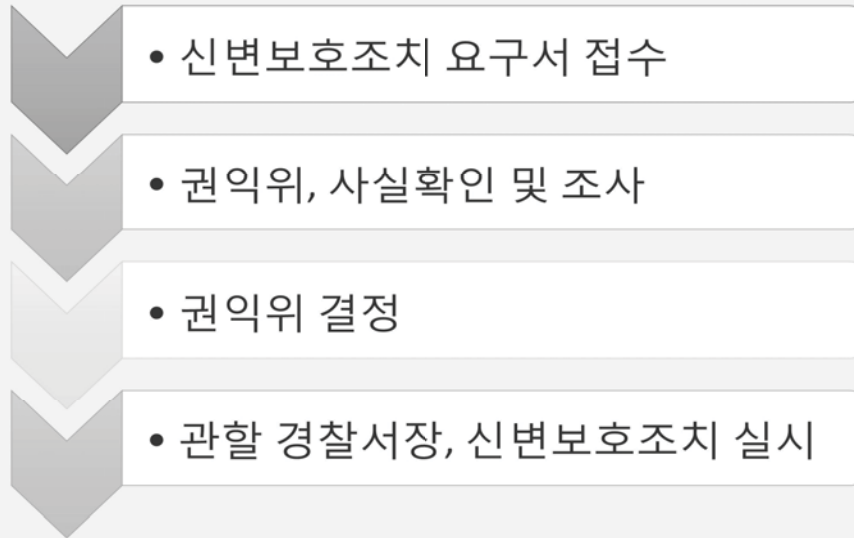
- 권익위,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대책 마련

- 신변보호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신변보호절차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발생 전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 발생 후

*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불이익 조치자 등에 대한 처벌

-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불이익조치자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그 외 신분상, 근무상 불이익조치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불이익 조치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 징계

-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유형



신분상 불이익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 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블랙리스트 작성,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인·허가 등의 취소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발생 전

불이익조치 금지권고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
- 불이익조치 금지신청(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불이익조치의 종류(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사실확인 및
조사



권익위 결정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발생 후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신청(불이익조치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권익위, 원상회복 등 요구 또는 권고
 - 요구 : 신분상·근무조건상 불이익조치 / 권고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화해의 권고
 - 보호조치·요구·권고·기각 전
 - 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사실확인 및
조사



권익위 결정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기타 보호제도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협조자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불이익조치의 추정

신고자 보호 사례

사례1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편취 신고



요양병원 내부 직원

담당 경찰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신고자 신상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권익위, 비밀보장의무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요구

사례2

정부출현기관의
퇴직금 과다지급 사실 신고



기관 내부 직원

“해임처분”

원상회복 요구 등



해당 기관에 해임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
기관장에는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II. 보상금·포상금 제도

보상 · 포상제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정청탁예방 및
척결에 기여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금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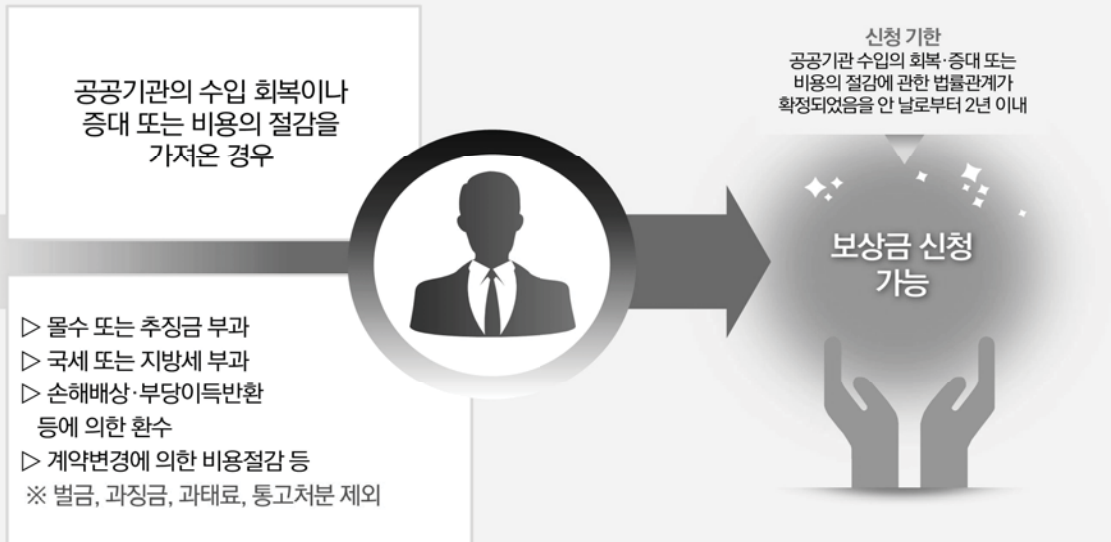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 원까지 지급

1. 보상금 제도(1)

보상금



1.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2)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한도액 30억원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30% 지급

감액 사유



-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 제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제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포상금 제도

포상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발
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3. 보상금 지급 사례

사례1

A업체가 공기업에 원가를 부풀려
장비를 납품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



A업체에 근무하던 B씨

11억 6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2002년 부패신고자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보상금

A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여원
전액을 환수 조치



위원회

사례2

지자체가 발주한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업체의 날림공사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



신고자 C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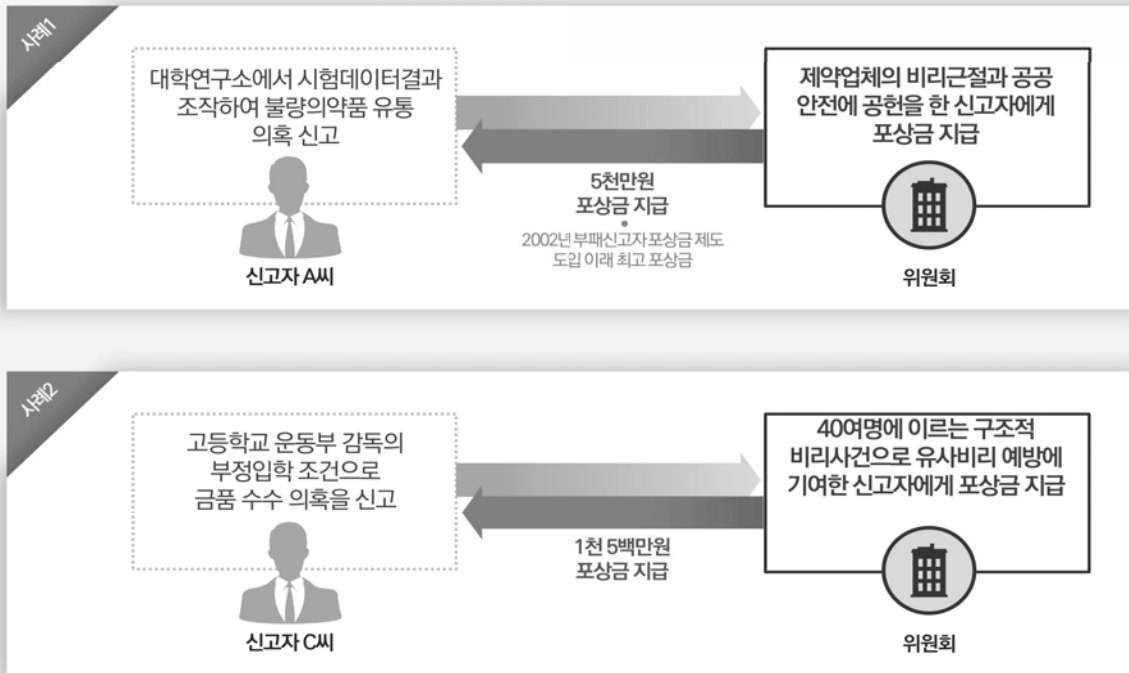
4억 5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시공업체가 편취한 금액 54억
7천여만원 전액 환수 조치



위원회

4. 포상금 지급 사례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방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기관차원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감사합니다

